

의안번호	2218938
의 퇴 인	서삼석 의원
회 답 일	2026. 9. 4.
추 계 번호	26B2625
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수산식물 유통 전 조사를 위한 DNA 분석 장비 구입(자산 취득비) 및 시료 수거·분석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3,900만원, 2028년 9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7,500만원(연 평균 3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수산종자 수거 및 검사 (안 제32조제2항)	139	9	9	9	9	175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제2항(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)	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중에 대하여 수산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음.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지정할 수 있으며, 수산종자생산업자는 지정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	재량규정 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2조제2항(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불법 수산종자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수산종자가 유통되기 전 수산종자생산업자로부터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, 관련 검사 실시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센터(수산물품질관리센터) 내 유통 전 시료 DNA 분석을 위한 장비 구입비(자산취득비)와 DNA 분석을 위한 비용(운영비)을 합산하여 산출함
 - DNA 분석 장비는 추계기간 중 첫 해(2027년)에 모두 구입하는 것으로, DNA 분석을 위한 운영비는 추계기간 중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 - 인건비의 경우 내부 기존 인력이 기존 수산종자 유통조사 출장과 병행하여 관련

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
- 수산종자 유통 전 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7,500만원(연 평균 3,500만원)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(자산취득비) DNA 분석 장비 구입*: 1억 3,000만원('27)
 - *DNA추출기(100백만원) + 전기영동장치(8백만원) + 유전자증폭기(10백만원) + 조직파쇄기(12백만원)
 - (운영비) 30회/연×6개 시료/회×50,000원/시료*: 900만원/연 ('27~'31)
 - *DNA 분석을 위한 전처리 비용 + 재료비 + 장비유지비

[표 2] 수산종자 수거 및 검사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수산종자 수거 및 검사 (안 제32조제2항)	자산취득비	130	—	—	—	—	130
	운영비	9	9	9	9	9	45
	합계	139	9	9	9	9	175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위진수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위진수	02-6788-4650	wjinsu@na.go.kr